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보안업무규정」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과 동시행규칙 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및 「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」(이하 "시행요강"이라 한다)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8. 6. 16〉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시 본청 및 사업소, 동에 적용한다.

- 제3조(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구성위원은 시행요강 제4조제2항제9호에 정한 사항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업무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09. 2. 20]
- 제4조(보안담당관의 임무)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- 1. 규칙 제66조에 정한 사항
  - 2. 시행요강 제3조에 정한 사항
  - 3. 본청, 사업소 동의 보안지도 감독
  - 4. 비밀보관책임자 교체시 비밀 인계인수 확인
- 제5조(분임보안담당관) 보안담당관의 업무 수행능률을 위하여 시행요강 제3조 제2항제3호에 의하여 각 국장은 당해 직위 임용과 동시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. 〈개정 2004, 9, 24〉

- 제6조(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)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보안담당관의 지도감 독을 받아 소속부서 비밀소유현황을 조사 파악관리하고 보안진단 및 보호구역관리와 지도·감독한다.
- 제7조(보관책임자)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보관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. 〈개정 98. 10. 2, 2010. 12. 15〉
  - 1. 정 책임자: 본청 사업소의 실장 과장 사업소의장 및 동장
  - 2. 부 책임자:정 책임자가 지정한 자

## 제2장 인원보안

- 제8조(인원보안업무의 취급)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. 〈개정 98. 10. 2, 2004. 9. 24, 2010. 12. 15, 2018. 9. 4〉
- 제9조(비밀취급인가의 제한) 비밀취급인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인가범위를 정한다. 〈개정 98. 10. 2, 2004. 9. 24, 2010. 12. 15〉
  - 1. 부시장・국장
  - 2. 각 실장 · 과장 · 사업소의 장, 동장
  - 3. 삭제〈98. 10. 2〉
  - 4. 실·과·사업소 보안담당자
  - 5. 기타 업무상 시장이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제10조(신원조사)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고용원의 채용 또는 기타사항으로 신원조사 필요시는 일괄 총무과로 신원조사를 의뢰한다. 〈개정 98. 10. 2, 2004. 9. 24, 2010. 12. 15. 2018. 9. 4〉

# 제3장 문서보안

- 제11조(비밀문서분류) 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8조의 비밀분류 기준과 국가정보 원에서 정하는 비밀 세분류지침에 의한다. 〈개정 99. 9. 20〉
- 제12조(비밀의 대내수발) 대내수발 담당자는 각 실·과 직원 중 비밀 취급인 가를 득한 자로 한다. 〈개정 98. 10. 2, 2010. 12. 15〉

- 제13조(비밀의 대외수발) 비밀의 수발은 총무과에서 행하며 그 담당자는 보안 업무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한다. 〈개정 98. 10. 2, 2004. 9. 24, 2010. 12. 15, 2018. 9. 4〉
- 제14조(비밀통제관) 비밀통제를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는 총무과장이 지정한 자가, 동은 동장이 지정한 자가 행한다. 〈개정 98. 10. 2, 2004. 9. 24, 2010. 12. 15, 2018. 9. 4〉
- 제15조(비밀의 소유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) ① 각 실장·과장·사업소의장 및 동장은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규정 서식에 의거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비밀 소유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.〈개정 98. 10. 2, 2010. 12. 15〉
  - ② 각 실장·과장·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전항에 의거 조사한 비밀소유현황을 비밀취급인가자 현황과 함께 다음 기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98. 10. 2, 2010. 12. 15〉
  - 가. 1월 1일 6월 30일 현황은 7월 5일까지
  - 나. 7월 1일 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5일까지

#### 제4장 비밀의 보관 및 관리

- 제16조(보관단위) 비밀은 실·과·사업소 동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 〈개정 98. 10. 2, 2010. 12. 15〉
- 제17조(보관책임자) ① 비밀보관 책임자는 비밀보관단위로 정·부책임자를 정하다.
  -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그 직위 임명과 동시에 정·부책임자가 된다. 〈개정 98. 10. 2, 2010. 12. 15〉

정책임자 - 본청, 사업소: 실장 · 과장 · 사업소의장

동 : 동장

부책임자 - 정책임자가 지정한 자

제18조(지출 및 파기계획) ①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지출 및 파기

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본청은 총무과에서 사업소는 소장이, 동은 동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4. 9. 24, 2010. 12. 15, 2018. 9. 4〉
- 제19조(재분류검토)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 검토는 매년 6월 20일 과 12월 20일 실시하여야 한다.

# 제5장 음어자재관리

- 제20조(음어자재의 관리 및 책임) ① 음어자재취급 정책임자와 부책임자를 각 각 1인씩 둔다. 정책임자는 정보통신과장으로, 부책임자는 보안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 〈개정 2004. 9. 24, 2009. 2. 20, 2010. 12. 15〉
  - ② 음어자재는 정보통신과에서 보관 관리하고 음어자재 점검부에 의거 주1회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. 〈개정 2004. 9. 24, 2009. 2. 20, 2010. 12. 15〉
- 제21조(음어자재의 운용) ① 음어자재를 사용할 시는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를 받아 보안 실무자 입회하에 사용하여야 한다.
  - ② III급 비밀, 대외비 내용은 반드시 음어화하여 수발하여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 이익을 유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음어화하여야 한다.
  - ③ 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 외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6장 시설보안

- 제22조(보호구역 설정 운영) ① 규정 제30조 및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(제한구역 및 통제구역)을 설정 운영한다.
  - ② 보호구역책임자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1.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밀인가자의 출입 통제책

- 2. 주야, 경계대책
- 3. 외부로부터의 투시,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
- 4. 방화대책
- 5. 경보대책
- 6.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
- 제23조(자체방호계획) 비상시 직장을 방호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청은 총무과에서 사업소 및 동은 사업소장과 동장이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 운영한다. 〈개정 2004. 9. 24, 2010. 12. 15, 2018. 9. 4〉

#### 제7장 보안점검

- 제24조(보안점검) ① 각 실·과·사업소(시장실, 부시장실, 국장실 포함) 및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일일 보안 점검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 〈개정 98. 10. 2. 2008. 6. 16. 2010. 12. 15. 2016. 9. 29〉
  - ② 보안점검은 평일은 1차로 최종퇴청자가 실시하고 2차로 당직근무자가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점검부에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.
  - ③ 보안점검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실장·과장·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보안점검 여부에 일일통제 확인 실시한다. 〈개정 98. 10. 2. 2010. 12. 15〉
- 제25조(보안진단의 날 운영) ① 보안사고의 사전예방과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각 실·과·사업소 자체로 보안진단을 실시한다. 〈개정 98. 10. 2, 2009. 2. 20, 2010. 12. 15〉
  - ② 보안진단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98. 10. 2, 2010. 12. 15〉
  - 가. 비밀소유 현황파악
  - 나.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파악
  - 다. 실·과·사업소, 동별, 자체보안교육
  - 라. 야간보안관리 실태
  - 마. 기타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

③ 본청 실·과·사업소는 보안진단 실시결과를 실시 익일 총무과에 제출한다. 〈개정 98. 10. 2, 2004. 9. 24, 2010. 12. 15, 2010. 12. 15, 2018. 9. 4〉

## 제8장 보안조사

- 제26조(보안사고 보고) ① 규칙 제62조 및 시행요강 제46조에 규정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(보안담당관경유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보안사고에 대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발생일시 및 장소
  - 2. 사고자 인적사항
  - 3. 사고내용(육하원칙에 의거)
  - 4. 조치사항
  - ③ 보안사고를 발생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징계 조치하며 사고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.

## 제9장 보안교육

- 제27조(보안교육) ① 보안담당관은 연 2회 이상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다.
  - ② 각 분임보안담당관(보안책임자)은 매월 보안진단의 날 소속직원에 대한 보 안교육을 실시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규정) 광명시 훈령 제9호 광명시보안업무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〈1998. 10. 2 훈령 제179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〈1999, 9, 20 훈령 제199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〈2004. 9. 24 훈령 제244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주 생략

부칙〈2008. 6. 16 훈령 제273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9. 2. 20 훈령 제280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0. 12. 15 훈령 제297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광명시 보안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, 제9조제2호, 제15조제1항과 제2항, 제17조제2항, 제24조제3항 중 "담당관·과장"을 "실장·과장"으로 한다.

제8조, 제10조, 제13조, 제18조제2항, 제23조, 제25조제3항 중 "행정지원과"를 "자치행정과"로 한다.

제9조제4호, 제12조, 제16조, 제24조제1항, 제25조제1항과 제25조제2항다목, 제25조제3항 중 "담당관·과"를 "실·과"로 한다.

제14조 중 "행정지원과장"을 "자치행정과장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민원정보통신과장"을 "정보통신과장"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"민원정보통신과"를 "정보통신과"로 한다.

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부칙 〈2016. 9. 29 훈령 제374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광명시 보안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"주민센터"를 "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"로 한다.

⑦ 부터 ⑩ 까지 생략

부칙 〈2018. 9. 4 훈령 제400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 하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광명시 보안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, 제10조, 제13조, 제18조제2항, 제23조, 제25조제3항 "자치행정과"를 "총 무과"로, 제14조 중 "자치행정과장"을 "총무과장"으로 한다.

⑨ 부터 ⑩ 까지 생략